

순천 교회서 목사 집단폭행

S교회 안수집사 등 4명, 예배 중에 폭력 휘둘러 설교 요청 받은 초빙목사 봉변...경찰, 수사착수

전남 순천시 조례동 소재 S모 교회 예배당에서 4명의 신도들이 목사를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하고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S교회 신도 등에 따르면 해당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4명(기아자동차 순천 모 대리점 김 모 대표, 황모씨, 송모씨, 정모씨 등)의 안수집사 등이 지난 1월 5일 주일 낮 예배 때에 설교를 준비 중인 초빙 목사를 폭행해 해당 목사가 전치 6주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폭행을 당했다는 허 모 목사(나주 D모교회 목사, 58)는 S교회의 설교(초빙) 요청을 받고 지난 1월 5일 오전 11시 주일 낮 예배에서 설교단 위에 올라가 강대상(설교대)에 서는 순간 김 모 대표, 해당 교회 안수집사 등 4명에게 강압적으로 끌려 내려왔다.

허 목사는 “강대상에서 설교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들 4명에게 강압적으로 끌려 내려오는 과정에서 양복과 넥타이 등이 찢어지고 오른쪽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 수도권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평생 장애로 살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담당 의사의 의견을 듣고 정신적

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괴로워했다.

이어 허 목사는 “이번에 폭행을 행한 교인 4명을 폭력(상해, 재물손괴) 및 예배 방해죄와 절도죄, 명예훼손죄(모욕죄) 등으로 고소했다”며 이날 집단폭행을 당한 영상과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진 일부 등을 언론에 제공했다.

또 S교회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해당 교회 신도인 김 모(기아자동차 대리점 대표) 씨와 그의 부인인 이 모씨(여, 64, 정신치장애 1급) 씨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 씨의 모친인 양 모(83)씨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S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이후 교인 약 30여명이 있는 교회 로비에서 딸(정씨)이 김 대표에게 “왜 그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나?”고 말하자, 김 대표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목살을 잡고 폭행하자, 김 대표의 부인인 이씨도 이에 가세하면서 뒤에서 목과 머리 부분을 폭행하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허 목사를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교회에 들어올 사람이 아닌 목사가 설교하는 것에 대해 강대상에서 끌어 내렸을 뿐이라며, 반대로



허 목사의 오른쪽 무릎 인대가 파열되어 수도권 종합병원에서 정장 7시간의 수술을 받은 이후 무릎보호 장비를 설치하고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우리(4명)가 허 목사를 고소했다”고 말할 뿐 그 고소장에 적시된 죄명이 무엇인지는 밝히진 않았다.

또 장애인 폭행에 대해서는 “당시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정 씨(고소인) 주위 사람의 진술이 있으며, 또 이날 촬영된 영상도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S교회 교인인 장애인과 나이 많은 권사 등이 김 대표를 고소·고발(폭행, 명예훼손 등)한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 보도한 기자와 몇몇 기자들을 고소하는 등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촉법소년’ 강력범죄 있는데...

“처벌연령 하향” vs “인지능력 기준 삼아야”

스위스는 연령규정 없어...인지능력 감정에 책임여부 결정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필요... “만 13세 범죄비율 높아”



흠뻑 렌터카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10대들이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쳐 숨지게 한 가운데 촉법(觸法)소년에게도 강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촉법소년의 법적 연령 하향이나 처벌강화 주장은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의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강력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만한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유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 있는 소년법도 아이들을 처벌 못하는 게 아니고 보호처분으로 소년원까지 갈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소년원이 소년 교도소와 같은 시설로 인식되는 걸 고려하면 소년원 송치가 숨방망이 처벌로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보호처분이라 하더라도 소년원 감치를 통해 자유를 박탈할 수 있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는 다만 오히려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처분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아이들을 마주했을 때 울고불고 하는 모습에 보호자 위탁이나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면서 “(판사들도) 실제로 아이들을 소년원에 보내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사회적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 조정과 관련해서 “만 14세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형법에서 책임능력이 없다고 규정해서 결정된 것”이라며 “일본이나 독일 등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도 만 14세를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령을 낮춘다고 하면) 만 13세는 책임능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며 “최근에 촉법소년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만 13세도 책임능력을 가질 만큼 성숙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 속하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의 처분에 관한 논란은 매년 촉법소년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등장한다. 지난해 12월 자신을 함담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초등학교생이 법무부 소속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을 때도 촉법소년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법적 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단순히 하향하는 것보다 범죄 개별건마다 상대적으로 판단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동진 참원대학교 신산업융합학과 겸임교수는 “연령을 무조건 낮출 것이 아니라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인지능력이 높다면 처벌할 수 있는 개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미 지난 2015년 발표한 ‘촉법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해당 논문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심리·의학·교육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일정한 테스트를 거쳐 인지능력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스위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스위스 형법에 따르면 행위자의 책임능력을 의심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해 책임능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촉법소년을 처벌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낙인”이라며 “무조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서 처벌하기보다 전문가들의 감정을 통해 충분한 인지능력을 가진 촉법소년들만 가려서 처벌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촉법소년들은 교화 정도가 매우 좋다. 사고 유언성이 성인에 비해 높고, 사고가 고착화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화도 빠른 편”이라며 “자유 제한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하도록 해서 더 이상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지적한다. 만 13세 사이에서 범죄율이 높게 나온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식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전체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 중에서는 만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5%가량 된다”면서 “기본적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지만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것을 두고 사회적 논의는 필요할 거 같다”고 말했다.

전체 청소년 범죄는 줄어들고 있지만, 청소년 강력범죄는 늘고 있는 것을 두고 공 교수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공 교수는 “현재 청소년범죄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디지털 관련 범죄인데 통제가 어렵고 익명성 탓에 (청소년들이) 과시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며 “디지털상에서 일탈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공간을 차단해 접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최서원이 사준 말 4마리 정유라 소유 맞다... “증여세 적법”

“말들 효용 가치 오로지 정씨만”

‘비선실세’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가 딸 정유라씨에게 사준 말 4마리는 정씨 소유로 1억 8000만원 상당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지난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2017년 11월 세무당국은 정씨가

최씨로부터 2011년~2013년까지 경기용 말 4마리 구입대금 4억3000만원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8392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정씨 측은 “이 말들은 최씨가 정씨를 위해 국위선양 및 교육상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그 소유권과 처분권 모두 최씨에게 있고 정씨는 무상으로 말들을 경기에 이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씨가 소유하기 위해 이 말들이 구입된 사실

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2012년~2015년까지 이 말들을 이용해 다수 국내대회에 참가했고 대회 출전 및 훈련을 위해 꾸준히 말들과 함께 운동했으며, 그 사용 및 훈련에 있어 최씨의 허락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최씨는 이 말들의 구입대금을 부담했을 뿐 말들을 직접 타거나 이용한 적은 없는바, 말들의 효용과 가치는 오로지 정씨에게만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